

문서번호	재무과-5271
결재일자	2015.3.25.
공개여부	부분공개

주무관	재산관리담당	재무과장	기획경제국장		
윤춘선	심재원	이기석	03/25 정은수		
협 조					

**- 2015년도 -
구유재산 실태조사 실시계획**

2015. 3.

**기획경제국
재무과**

2015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계획

공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 서울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2 추진방향

- 무단점유가 확인된 재산은 변상금 징수 등 원상회복 조치 이행
- 전수 실태조사 완료된 기존 관리재산의 적정 관리여부 조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자료의 지속적 유지관리 및 정확성 제고

3 추진일정

《 1차 추진기간 : 2015. 4. 1 ~ 5. 31 (2개월간) 》

- 기초조사 ----- 【2015. 4. 1 ~ 4. 7】
 - 지적공부, 각종지도, 현장사진 등의 기초자료 조사

- **현장조사** ----- 【2015. 4. 8 ~ 4. 28】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정밀(측량)조사** ----- 【2015. 4. 29 ~ 5. 12】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전산조사** ----- 【2015. 5. 13 ~ 5. 23】
 - 현장조사 내용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의 비교조사 및 정비
- **결과조치** ----- 【2015. 5. 26 ~ 5. 31】

《 2차 추진기간 : 2015. 6월 ~ 10월 (5개월간) 》

- 1차 실태조사 기간중 누락분 조사 ----- 【2015. 6월 ~ 10월】
- 실태조사 추진실적 결과 보고 ----- 【2015. 11월】

4 세 부 추 진 계 획

■ 조사대상

- 일반재산 : 토지 806필지 87,108㎡ /
- 행정재산 : 토지 498필지 238,372㎡ / 건물 223건 141,036㎡

■ 조사방법

- 각 재산관리관별로 실태조사하여 재산총괄관(재무과)에게 조사결과 제출
- 단계별로 전수조사하되, 각 재산관리관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

■ 실태조사 추진체계

- 재산총괄관(재무과) :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시행 등
- 각 재산관리관 : 자체계획 수립, 소관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 행정조치 이행 등
- 실태조사 추진반 구성(재무과)

책임관	담당관	조사반원	조사지역
재무과장	재산관리팀장	행정6급 윤춘선	성북동, 안암동, 종암동
		세무6급 은성기	삼선동, 동선동, 돈암동
		행정7급 한송희	상월곡동
		행정8급 오재연	동소문동, 길음동, 석관동
		행정9급 김준형	보문, 정릉, 하월곡, 장위동

■ 실태조사의 내용

- 토지대장, 등기부 등 각종 관련자료 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 조사대상 필지를 현재의 토지등기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과 상호 비교
- 대부된 재산에 대하여 적정사용여부 및 목적외 사용 등 불법사용여부 조사
- 무단점유가 추정되어 현황측량 등 정밀현황조사가 필요한 재산
 - 현황측량 및 변상금 부과 등 시효중단 조치
- 유희재산에 대한 지목변경, 용도변경 등 재산가치 향상 방안 강구
- 소관재산의 적법관리 여부 및 관리현황 변경 여부

5 결과 조치

■ 새울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리

-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처리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별도 정리 및 보관

■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 조치 이행

- 관리 누락된 재산 발견즉시 권리보전조치 및 관련공부 정리
- 등기부상 구조유이나 취득보고 미이행 재산은 즉시 취득보고 이행

■ 시효중단 조치

- 무단점유재산이 일반재산이고 점유기간이 장기간인 경우는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 대부 등 시효중단조치 등 확행
- 정당한 사용을 위해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 유도
-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즉시 말소등기 조치 이행

■ 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의 불법사용 제거

-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의 사례를 적발하여 계약해지 ·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 관리재산 지적정리 조치

-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 토지정리 추진
- 지목변경 · 합병 등

6 행정사항

■ 1차 실태조사 결과보고(각 재산관리관) : 2015. 6. 10한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정비 완료 : 2015. 6. 30한

■ 1,2차 실태조사 추진실적 결과 보고 : 2015. 11월중

붙임 1) 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2) 구유재산 실태조사 대상(토지 · 건물) 자료 1부. 끝.